

JTBC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

제1조 목적

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, 제88조, 제90조,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,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권한과 직무

JTBC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
-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편성, 제작, 보도 책임자와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
- ③ 경영진(사장 포함)에게 직접 의견 제시
- ④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
- ⑤ 시청자평가원의 선임
- ⑥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

제3조 위원회 구성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 후보자 모집

- ① 후보자 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위원 임기만료 2달 전에 시행한다.

② 후보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외부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③ 외부 단체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제출서류(이력서, 추천 단체 추천서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정관 등), 모집인원, 모집기간, 위촉절차, 위원 결격사유,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 후보자 추천

① 시청자위원의 후보는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야한다.

1. 초·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
2. 소비자보호단체
3. 여성단체
4. 청소년관련 단체
5. 변호사단체
6. 언론관련 시민·학술 단체
7.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
8. 노동단체
9. 경제단체
10. 문화단체
11. 과학기술 단체
12. 인권단체
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
2.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정관이 있을 것

제6조 위원 적격 여부 심사 및 결격 사유

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.

② JTBC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청자

위원 후보로 선정하지 않는다.

1. JTBC와 연계된 방송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
2.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교육공무원, 법관 제외)
3. 최근 1년 이내 국내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을 역임했던 자
4. 기타 당 방송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제7조 후보자 선정

-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여부와 함께 직능별,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,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② 특히 후보자 선정 시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,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위원과 균형 잡힌 성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8조 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

-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한다.
-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은 전략편성실장, 보도국장, 시청자담당, 사원대표 2명(시청자위원회 운영 담당자 1명 포함), PD 대표 1명, 기자 대표 1명 등 8명으로 구성한다.
단, 방송사의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명과 직책명 변경시에는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행하는 자가 선정위원회 위원을 대신할 수 있다.
- ③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가 고루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- ④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 선정 시 사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사임할 경우 제4조를 생략하고 최근 1년간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 임기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, 부위원장, 운영위원과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으로 인해 위촉 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 이 경우에도 동조 ①항의 연임규정을 적용한다

제10조 위원장, 부위원장의 직무 등

- ① 위원장은 시청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1조 위원회 운영

-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 단, 정기회의 개최 날짜는 위원회나 경영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월 정기회의 한달 전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
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2.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시청자위원들에게 전화, E-MAIL,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의 개최 공지를 실시한다.
- ③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된다.
- ④ 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편성, 제작, 보도 책임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- ⑤ 회의록은 JTBC 직원들과 시청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JTBC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- ⑥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⑦ 시청자위원회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을 위해 시청자위원회 운영진은 사전 검토를 위한 '위원 게시판' 혹은 '단체 채팅방'을 개설하여 운영한다.
- ⑧ 시청자위원회 운영진은 시청자위원들이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견, 시청자평가원 의견, 방송통신위원회 조치 사항 등을 회의 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시청자위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

요청 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12조 회의비 지급 등

JTBC는 시청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청자위원에게 자료 수집 및 자문을 위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정기회의(온·오프라인) 참석 시에만 회의비가 지급된다.

제13조 해촉 규정

아래의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된다.

1. 본인이 중도 사임했을 경우
2.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
3. 정기회의의 연간 출석횟수가 1/2 미만인 경우
4. 임기 중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

부칙

제1조 시행 및 개정이력

본 규정은 '2011년 9월 1일'자로 적용한다.

본 규정은 '2013년 12월 1일'자로 개정 적용한다.

본 규정은 '2016년 1월 1일'자로 개정 적용한다.

본 규정은 '2019년 1월 1일'자로 개정 적용한다.

본 규정은 '2022년 4월 1일'자로 개정 적용한다